

대구대학교와 밝은성모안과의  
**업무 협약서**

대구대학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와 밝은성모안과(이하 “제공자”라 한다)는 아래와 같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목적**

본 계약은 양 기관 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협약으로서 “이용자” 인 교직원 및 가족 진료에 필요한 사항과 “제공자”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의료서비스 대상**

- ① “제공자” 의 의료서비스 대상은 “이용자” 의 교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.
- ② 가족이라 함은 교직원 본인의 부모, 형제, 자매, 자녀와 배우자의 부모, 형제, 자매로 제한한다.
- ③ “제공자” 는 진료 및 수술 시 “이용자” 의 교직원 또는 그 가족 여부를 확인 한다.
- ④ “이용자” 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의 교직원 및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“제공자” 의 승인 하에 진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다.

**제3조 의료서비스의 범위**

- ① 제2조에 대한 진료 후 진료비는 의료보험 청구 대상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기본 수가를 적용한다.(별지 참조)
- ② 의료보험 청구 비대상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“제공자”가 지정하는 수가를 적용한다.(별지 참조)

**제4조 고지 의무**

“제공자” 는 약정기간 중 진료과목, 진료비, 상호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“이용자” 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“이용자” 의 요청에 의하여 교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.

**제5조 책임**

- 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발생 책임은 “제공자” 에게 있다.
- ② 진료 및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“제공자” 가 진다.
- ③ 제 4조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“제공자” 에게 있다.

## 제6조 협약기간

본 제휴서의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 까지로 한다.  
다만,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“이용자”와“제공자” 쌍방간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약해지 처리 된 것으로 하며, 쌍방이 협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매 1년씩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.

## 제7조 변경 및 해지

“이용자”와 “제공자”는 서로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(1) 본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- (2) 교직원우대에 불성실하여 공신력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
- (3)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협약 해지가 불가피할 때

## 제8조 비밀유지

“이용자”와 “제공자”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및 고객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상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

## 제8조 기 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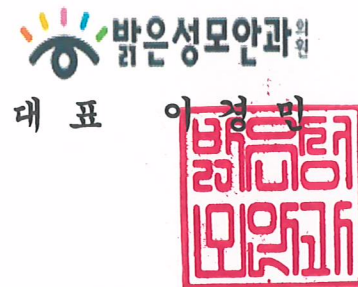
이 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.

상기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8월 일

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

## 의료복지업무 지원내용

밝은성모안과는 대구대학교가 정한 교직원 그리고 가족(직계가족, 처가포함)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, 대구대학교에서는 협약관련 내용을 구성원에게 홍보한다.

- 아 래 -

라식/라섹 수술비 우대

수 술 명	우 대 율	정 상 가	제 휴 가
라식 / 라섹	50%	80만원	40만원
PM라섹	58%	140만원	60만원
프리미엄 라식 / 프리미엄 라섹	51%	160만원	89만원
PMP 라식 / PMP 라섹	60%	240만원	99만원
아마리스레드플러스 라식/라섹	55%	220만원	99만원
드림렌즈(국산렌즈)	32%	110만원	75만원
드림렌즈(수입렌즈)	30%	130만원	90만원
프리미엄노안 라식 / 라섹	40%	190만원	110만원
PMP 노안 라식 / 라섹	45%	230만원	130만원

※ 단, 기타 가격조정 상황(장비 도입 등)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금액 조정 가능

본 협약서는 대구대학교와 밝은성모안과의 공식 협약에 의한 의료복지업무 지원내용임을 알려드리며, 내용에 있어서 일체 거짓 허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